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17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existenc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cosystem)

김현수/염수현/강인규/박상미

2018.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 보고서는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김현수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염수현 연구위원

강인규 부연구위원

박상미 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v
제 1 장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제 1 절 추진배경	1
제 2 절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1
1. 협의회 구성	1
2.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	3
3. 진행 경과	5
제 2 장 주요 논의내용	7
제 1 절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7
1. 개 요	7
2. 역외적용 명문화	8
3.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13
4. 임시중지 제도 도입	19
5.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23
6. 국제 공조체계 구축	27
제 2 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29
1. 개 요	29
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30
3.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 체계 개편	37
제 3 절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41
1. 망 중립성	41

2. 제로레이팅	53
제4절 망 이용료 정책	61
1. 논의 배경	61
2. 국내·외 망 이용료 현황	62
3. 주요 쟁점	65
4. 이해관계자별 입장	66
5. 소위원회 논의결과	69
제5절 상생협력	71
1. 논의 배경	71
2. 사업자별 상생 협력 현황	71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제안내용	79
4. 소위원회 논의결과	80

표 목 차

<표 1-1>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2
<표 1-2> 제1소위원회 구성	4
<표 1-3> 제2소위원회 구성	4
<표 2-1> 해외 통신규제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35
<표 2-2> 통신4사의 CapEx 추이	48
<표 2-3>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	54
<표 2-4> 이통3사 사업자별 자사·계열사 제로레이팅 비중	54
<표 2-5>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분야	55
<표 2-6>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부가요금	55

그 립 목 차

[그림 2-1]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 변화	45
[그림 2-2] ICT 서비스별 연간 매출액 및 무선트래픽(매년 12월) 추이	48
[그림 2-3]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도	49

요 약 문

1. 제 목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5인,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등 9인, 정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주요 논의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을 다루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

제하는 경우 조사제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관할권 측면에서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허가신고주체와 사업주체의 일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집행 실효성 측면에서는 국내대리인 제도 및 임시중지 제도 도입,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최근 인터넷 생태계가 다변화되어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됨에 따라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 현황 파악 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정책,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5G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현행체계(가이드라인)를 유지하는 방안,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하는 방안과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망 이용료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였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망 이용료 실태 파악,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실행방안 및 법개정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Coexistenc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cosystem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e need to prepare measures including setting up future-oriented and reasonable internet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ganizing and operating a functional social discussion organiza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Internet Win-Win Growth Council" is an advisory body composed of a total of 48 people including 18 consumers, 12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9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 We have discussed policy measures for eliminating reverse discrimination and developing the Internet ecosystem. Major discussions include ▲ improvement of system such as securing jurisdiction and executive power to resolve discrimination at home and abroad, ▲ reorganization of post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business, ▲ policy for network neutrality and network use, ▲ policy for win-win cooperation.

4. Research Results

The First Subcommittee of the Internet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mmittee discussed the ways to address the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nd to revise the regulatory frameworks for telecommunication business. First, it discussed whether the domestic law could be applied to the foreign companies to ensure the jurisdictional power and enforcement power necessary for addressing the reverse discrimination issue, then it further discussed, if the jurisdictional power exists, whether the investigation and the penalty are realistically available, and whether the relevant enforcement will be sufficient. With regard to the jurisdiction, major topics considered include; providing an express legal basis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order to apply the domestic law to foreign companies; the need for making business entities applying for a permit or reporting correspond with the business entities doing business.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proposed solutions include the obligation to appoint representative located in Korea, introduction of the temporary suspension order, and the need for setting up global cooperation regime. Moving on to the next topic, the subcommittee comprehensively diagnosed the internet ecosystem, as the internet ecosystems get diversified, conducts that harm fair competition and user welfare also get diversified and varied. Then based on the diagnosis, the subcommittee deliberated how to figure out the market situation and make sensible regulation to improve the fair competition and user protection system.

The Second Subcommittee discussed network neutrality, zero-rating policy, and network use payment policy, and win-win cooperation plan. First, differing opinion was submitted as to the 5G era policy direction, such as maintaining the status quo (guidelines), enhancing the regulation and deregulation. With respect to the zero rating, opinions were divided into the way to ex-post regulation when the unfair conduct take place and the way

to permit zero-rating under certain condition. Regarding the network use payment policy direction, consensus was reached that it merits regulation to prohibits unreasonable network use payment discrimination and to prevent user form suffering damages during negotiation process as far as regulation does not undermine the autonomy of internet ecosystem. Specific policy measures proposed were to grasp the exact state of network use payment, to prohibit unfair conduct and to promulgate guidelines. Finally, this report collected public comments from the interested party on the win-win cooperation plan proposed by the companies, suggested the best practic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policy proposal proposed by the council may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amendment bill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6.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ecosystem by using it as basic data to discuss how to create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nd win - win.

CONTENTS

Chapter 1. Background and Progress

Chapter 2. Major discussions

제 1 장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제 1 절 추진배경

- 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바람직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운영(' 18. 2월~12월)

제 2 절 협의회 구성 · 운영방식

1. 협의회 구성

- (위원) 인터넷 정책 전문가 21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 12인, 관련 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
 - * 인터넷기업(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아프리카TV, 우아한 형제들, 콘텐츠 연합플랫폼, CJ ENM(티빙), 시지온), 통신사(SKT, KT, LGU+)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 케이블방송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 전문가 중에서 김상훈 광운대 교수를 선정,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제·논의안건 조율 등을 담당

〈표 1-1〉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구분	기준·방법
전문가(21인)	법·경영·경제·미디어 등 민간 전문가 위촉
소비자·시민단체(5인)	소비자·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
인터넷·통신사(12인)	포털 등(3사), 글로벌 사업자(2사), 콘텐츠개발사(4사), 통신사(3사)에서 각 1인 위촉
관련단체(7인)	인터넷 관련 이해관계자 협회에서 각 1인 위촉
정부·유관기관(3인)	인터넷 정책 관련 3개 부처 담당 국장

※ 위원 명단은 붙임1 참조

- (운영 방식)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인터넷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되, 참석을 원할 경우 1, 2 소위 구분하지 않고 참여 가능



- (논의 의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 개편 방안’ 과 ‘망 중립성,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협력 방안’ 등 정책의제를 기초로 위원이 제안한 의제 추가
- (운영 기간) 약 10개월 간 운영(* 18. 2월~12월)
- (회의 진행) 발제자의 의제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회의 공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 가능
- (활용 방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제출, 정책수립에 참고
- (국민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 18. 3. 6.~9. 6.)
 ※ 접수된 의견은 총 6건임(붙임2 참조)

2.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

- (구성) 각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9~10인) 및 소비자·시민단체(2~ 3인)로 구성하고,
 -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논의·검토
- (제1소위원회)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방안 논의

〈표 1-2〉 제1소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전체/ 소위원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	미디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법률
엄호동	미디어디렉션 연구소장	미디어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
최정일	승실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법률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 시민단체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률/ICT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소비자· 시민단체

○ (제2소위원회)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정책, 망 이용료 정책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

〈표 1-3〉 제2소위원회 구성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위원장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률
김동민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미디어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경제센터장	ICT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디어	송명빈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ICT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소비자· 시민단체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소비자· 시민단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김선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소비자· 시민단체

3. 진행경과

○ (전체회의) 2회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2. 23)	협의회 운영계획, 기조발제	○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 ○ 인터넷, 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
2차 (’18. 12. 13)	정책제안서	○ 소위별 결과 보고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제안서 확정

○ (제1소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8월 제외), 총 7차례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3. 16)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집행력 확보	○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 역외적용-국내대리인·임시중지제도 등 법제도 개선
2차 (’18. 4. 13)	"	○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추가 논의 ○ 국내 대리인제도 관련 법안 현황
3차 (’18. 5. 11)	"	○ 역차별 현황 및 주요 쟁점 ○ 역차별 해소 방안 추가 논의
4차 (’18. 6. 8)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 인터넷 생태계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5차 (’18. 7. 13)	"	○ 인터넷 시장 규제 개편 추가 논의 ○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 추가 논의
6차 (’18. 9. 7)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집행력 확보	○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 규제 집행력 증대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
7차 (’18. 11. 22)	결과보고서	○ 1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 (제2소위원회 회의) 월 1회 개최(8월 제외), 총 7차례 개최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8. 3. 26)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 망 중립성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의 입장 ○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검토
2차 (’18. 4.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의 쟁점과 대안의 모색 ○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관련 쟁점 정리
3차 (’18. 5.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로레이팅의 현황 ○ 인터넷망상호접속 개념과 제도 현황
4차 (’18. 6. 26)	망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중립성/제로레이팅/망 이용료 관련 중소 CP 입장 ○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5차 (’18. 7. 23)	망 이용료/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CP의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계속) ○ 통신사/대형 CP의 상생 및 사회공헌활동
6차 (’18. 9. 13)	망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 이용료/망 중립성 관련 전문가 발제(대형 CP 추천) ○ 망 이용료 관련 해외사례(통신사 추천)
7차 (’18. 11. 28)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제 2 장 주요 논의내용

제 1 절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 ◆ **국내의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방안에 관하여 총 4차례(제1차~제3차, 제6차 회의) 논의 진행**
 - 역외적용,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국제 공조체계 구축 등
- ◆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안 등 논의**

1. 개 요

-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 일부 해외 사업자는 같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규제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 이러한 경쟁상 불이익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
 - (관할권)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주체의 일치 필요성 등 제기

- (집행 실효성) 국내대리인 제도 및 임시중지 제도 도입,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 제기
- ※ 개별 규제의 완화 필요성은 해당 규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협의회에서는 기존 규제의 적용 측면에서 역차별 원인을 식별하고 개선방안 모색하되,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는 기존 규제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 의제로 논의

2. 역외적용 명문화

가. 논의 배경

- 국경 없는 서비스인 인터넷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한 국가의 규제 관할권의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적용*을 전기통신사업법 등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됨
 - * 역외적용이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
- 미국-EU 등의 많은 국가들은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역외 적용이 국제법상 관할권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찾기 어려움
 - 반면, 통신법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및 자국 통신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이 대부분이므로, 해외에서 역외적용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규정 도입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

나. 국내의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협의회 운영 중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18. 12. 7일)

※ 김성태 의원(' 17. 10월, ' 18. 2월, ' 18. 7월), 김경진 의원(' 18. 2월, ' 18. 9월), 박선숙 의원(' 18. 7월) 대표발의

- (공정거래법) ' 04년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대법원은 역외적용 규정이 없었을 때에도 역외적용 인정

-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규정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적용의 기계적 적용은 자칫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 대법원은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만 제한적으로 역외적용 인정

- (자본시장법) ' 07년 법제정 시부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통신 관련 국내법 적용사례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역외적용 규정이 없으나, 방통위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외사업자에게 관할권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법 적용하여 조사·제재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 사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SKB 및 LGU+ 이용자의 접속속도 저하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3억 9,600만원, ' 18. 3월)
- (정보통신망법 사례) 구글의 스트리트뷰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구글 본사 현장조사 및 과징금 부과(2억1천2백만원, ' 14. 1월)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는 규정 신설 (김경진 의원, ' 18. 9월)

□ 주요 쟁점

- (필요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역외적용 규정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사례는 불법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임
 - ** 해외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도 국내 통신망을 통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서비스의 제공지가 국내인 점, 그 제공과정에서 국내설비가 반드시 활용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음
- 또는, 역외적용 규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역외적용이 가능하되, 개별 조문 행위별로 역외적용 인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존재
- (실효성)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더라도 역외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대상이 속하는 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조가 전제되어야 함
 -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양국에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러한 협조가 가능할 것임

- (적용범위) 역외적용이 가능한 행위유형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항을 해외 사업자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예를 들면,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술적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수 규정이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해외 현황

- 해외 주요국에서 역외 적용하는 대표적인 법은 공정거래법이며, 그 외 금융 관련 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역외적용 하고 있음
 - (미국) 주로 판례를 통해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지식재산권법, 해외 부패행위방지법 등에서 역외적용을 광범위하게 적용
 - (EU)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규제기관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로 경쟁법(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 EU 회원국의 정보주체에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을 처리하거나 EU 내에서의 EU 회원국 정보주체의 활동의 모니터링과 관련한 활동을 처리하는 EU 밖의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에게도 적용(제3조제2항)
 - (일본)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98년부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 *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물품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그 자를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외국에서 당해 개인정보 또는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제75조)

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1) 글로벌 CP

- 해외 사업자도 이미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국내 CP

- 기존에 이미 해석상 인정되어 오던 것을 법률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력의 담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3) 통신사

- 국내법이 해외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현재도 규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역외적용 명문화 시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현재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시 **외국법인을 직접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 여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으나, **법 적용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역외적용 명문화 필요
 - ◆ 다만, 역외적용을 규정하더라도 **어떠한 조항을 역외적용할지 검토 필요**하며, **국제적 공감대 없는 규제**는 해외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조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 개선 필요
 - **조사권 강화**를 위해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방해, 자료 미제출 등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예: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필요
- * “6.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서 상세히 논의

3.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가. 논의 배경

-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규제기관의 해외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 등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등 제기
 - 유럽연합의 GDPR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한 것을 참고
 - 협의회 운영 중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18. 8. 30일)

-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및 도입 시 통상법 위반 가능성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나. 국내의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 방송통신 관련 입법례

- (정보통신망법)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18. 9. 13. 공포, ' 19. 3. 14. 시행)
 -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
 - 국내대리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WTO GATS 제14조에 따라 회원국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규범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규제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한미 FTA 제23.1조는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 한미 FTA 제23.1조 일반적 예외 〉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 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 WTO GATS 제14조 일반적인 예외 〉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와 처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구좌의 비밀번호
- (3) 안전

- (방송법)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심사 시 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국내 지사 등이 외국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제78조의2 제2항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방송사업자(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및 국내 대리인 포함)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78조의2제4항)

- (전파법) 적합성 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적합성평가고시 제27조)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사업법 개정안, ' 18. 2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처리
 - 이용자 불만을 즉시 처리하고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부과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국내대리인의 범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부과 가능
- (박선숙 의원 사업법 개정안, ' 18. 7월)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 처리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대리인에게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박대출 의원 위치정보법 개정안, ' 18. 3월) 국내대리인은 허가 등의 신청 및 사업 등의 신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대리
 - 국내대리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업자 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쟁점

- 핵심 쟁점은 국내대리인 제도가 자기책임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한미 FTA 상 현지주재(local presence)* 조항 및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 한미FTA 제12.5조(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한미FTA 제12.2조(내국민대우)

1.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동종의 상황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 국내대리인에게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자기 책임 원칙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면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이라는 견해 존재

2) 해외 현황

- (EU GDPR)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가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제27조제1항)
 - (대리의 범위) 대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자·수탁처리자와 함께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착수하도록 규정(제27조제4항)
 -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을 유지하고, 감독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할 의무

- 감독기관은 대리인에게 범위반행위 조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의 책임) 정보처리자·수탁처리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보 처리자·수탁처리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정보 처리자·수탁처리자에 한정
- ※ 유사 해외 입법례는 유럽연합의 GDPR 외에는 찾기 어려움

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1) 글로벌 CP

- (자기책임원칙 위반) 국내대리인이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 위반 소지
- (한미 FTA 위반) 국내대리인이 물적인적 조직 및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주재 조항 위반 및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반될 소지
 - (현지주재 위반)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의무, 금지행위 관련 사실 조사 의무 등 각종 법상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내에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
 - (내국민대우 위반) 국내 동종 부가통신사업자와는 달리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해외사업자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불리한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 높음
- (이용자이익 저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국내 이용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해외 사업자들에게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신규사업자의 국내 진출을 막거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을 국내대리인 도입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비용에 전용할 가능성 존재

2) 국내 CP

- (자기책임원칙 위반)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높음

- (실효성 미비)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영세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추가 규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국내대리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해외사업자의 실질적인 시정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 사실조사의 경우에도 국내대리인의 서류·자료만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3) 통신사

-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와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
 - 다만,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은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소명 등 규제기관과의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하여 행정력 낭비와 혁신 저해를 방지할 필요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자기책임원칙 및 통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에게 절차적 의무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은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공감
- 또한, **국내 영향력이 미미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 **정보통신망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 * 한미 FTA 제23.1조(일반적 예외)에 의해 준용되는 GATS 제14조(일반적 예외)의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
- 진입규제(허가·신고) 등 전기통신사업 전반을 관여하는 사업법의 성격상 **한미 FTA 현지 주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많았으며,
-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조사관련 **자료 제출 의무, 규제기관과의 협조** 등 EU GDPR 수준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시

4. 임시중지 제도 도입

가. 논의 배경

-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한국 규제기관에 협조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집행력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 ' 17.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이 게시된 텀블러에 대해 불법콘텐츠 대응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텀블러는 미국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회사이고,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 며 거부
 - 협의회 운영 중 텀블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정책을 알림(' 18. 12. 4일)
 - 이에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조치 도입의 필요성 제기

나. 법제도 현황

1) 입법례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 행위가 법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고,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

- 공정위는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8조제1항)

- ※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상의 임시중지를 명한 사례는 2건으로 파악됨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사업자·통신판매업자의 범위반*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32조의2제1항)

- 또한,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계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의무제공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제32조의2제2항)

- ※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 어썸에 대해 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통신판매를 일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17. 10월)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18. 2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휴·폐업으로 연락 불가능 및 이용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서비스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역무의 제공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18. 9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쟁점

- 임시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상 즉시강제 발동에 있어 그 요건과 행사범위*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불법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은 즉시 삭제·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임시중지 제도 도입 필요

- 그러나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정상 이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당한 피해를 비교형량하여야 함

※ 사업자가 연락 불가능하여 국내관할권을 무시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외에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논란 존재

- 또한,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해당 서비스만 분리하여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필요성 제기

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 1) 국내외 CP

- 헌법상 영업의 자유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및 실효성 미비
- (최소침해 원칙 위배) 개인정보 침해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서비스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최소침해 원칙 위배
 - 기본권 침해가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
 - *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개인정보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익 균형성 위배) 얻고자 하는 공익이 불확실한 반면, 침해되는 사익은 월등하게 큰 상황임
 -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임시중지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적음
 - 반면, 서비스가 중지되면 유사서비스로 쉽게 대체될 수 있어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다수의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됨
- (실효성 미비) 국내망을 차단하여도 우회 접속, 대체사이트 개설 등이 가능하여 임시중지 제도의 실효성 여부가 의문스러움
 -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서비스만을 분리하여 차단이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임

2) 통신사

-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중지 제도의 개선·보완 필요
 - 이용자 피해가 명백한 경우나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중지 처분을 내린다면, 영업의 자유 제한이나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임시중지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 있다**는데 공감
 - 텀블러 사례 등과 같이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하면서 서비스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 명령 필요
 - (**발동요건**) 인터넷을 통한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받는 **사업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해야 함
 - ※ 표시광고법상 임시중지 명령이나 단말기유통법상 긴급중지 명령과 같이 명백성, 긴급성 및 필요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적용대상**)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중지명령** 집행할 필요

마. 향후 과제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 ' 18. 9월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방통위의 접속경로 차단 요청권 규정
- 임시중지명령 등의 발동요건 및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5.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 불일치 해소

가. 논의 배경

-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자는 해외 본사업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실무상 각종 허가·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본사 명의가 아닌 국내 자회사 명의로 허가·신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사업자인지 혼란을 야기하고, 규제 기관이 실제 법 집행 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데에도 어려움 발생
- 이에 허가·신고 명목의 실질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각종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나. 법제도 현황

1) 전기통신사업법

- (관련규정) 국내에서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부가통신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 미신고 상태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서비스 제공 중지 명령 또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음
- (현황) 해외사업자의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행정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 자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 * 구글코리아('06. 4. 18), 애플코리아('10. 8. 11), 넷플릭스코리아('16. 1. 14) 등 부가통신사업 신고(페이스북코리아는 미신고)
 - '16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외국 법인의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가능해짐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절차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증명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아직 외국 법인의 신고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쟁점) 신고 서식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 자회사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타법례

-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신고절차 측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어 외국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기 어렵고 자회사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 법인의 통신판매업 신고 사례는 알려진 바 없음
 -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18. 11. 9일)은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 (위치정보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고하거나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방통위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 허가 신청·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 해외 사업자인 우버가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형사고발(' 15. 1월)이 이루어지자 우버가 본사 명의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 15. 3월)를 하였고, 이후 다수의 외국 법인의 신고가 수리됨
 - ' 18. 6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영업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신문법) 인터넷포털 등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언론사의 뉴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매개하는 것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필요
 - 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도지사 등에게 하여야 하므로 해외 사업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

- 특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기사배열책임자에 대한 국적요건(대한민국 국민)이 규정되어 있어 해외사업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1) 글로벌 CP

- 현재도 문제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 규제기관이 외국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신고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임
 - 신고제도 완화 시 사업자 규모보다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

2) 통신사

- 의견 없음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해외사업자는 본사가 직접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법령상·실무상 장애를 제거하여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공감
 - 국내 자회사 명의로 허가·신고 시 범위만 상태를 시정하기 어려운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 다만, 해외 사업자의 허가·신고 명의 일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수의 진입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출 필요
 -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제의 경우 그 존치 여부 또는 완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 신고제 폐지 또는 신고 면제기준 현실화(예: 이용자수) 등

-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시 우선 시정을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제재수단이 과도하여 규제기관이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실질적 규제 집행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

마. 향후 과제

○ 진입규제로서의 신고제 폐지 또는 완화 방안 검토 필요(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 협의)

○ 신고제 유지·완화 시 해외사업자가 본사 명의로 신고하도록 행정해석 및 관행을 명확히 할 필요(과기정통부 및 타 부처 협의)

- 정부부처 간 연계·협력 하에 각종 인허가신고 등을 본사 명의로 하도록 일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6. 국제 공조체계 구축

가. 논의 배경

○ 해외사업자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 조사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집행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이 최선

- 또는, 해외사업자의 동일 행위에 대해 조사제재하고자 하는 국가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집행 실효성 강화 가능

○ 또한, 집행하고자 하는 특정 범규가 인터넷에 대한 비규제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고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내 인터넷 규제의 국제 규범화 및 국제공조 모색 필요

나. 국내의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 (공정거래법) 정부는 외국정부와 공정거래법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있음
 -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음(제36조의2)
 - 또한, 각국 공정거래 규제기관들은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이라는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며, 그 해 각 국가의 현안 검토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 공유

2) 해외 현황

- (EU)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와 각국의 규제기관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GDPR 제50조)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EU 법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메카니즘 개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집행 시 국제 상호 지원: 통지, 민원 전달, 조사, 지원 및 정보 교환 등 다각적 조치
 - 관할권 상충 문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실무의 교류와 문서화 증진

다. 소위원회 논의결과

- ◆ 국제적인 관계에서 집행력 약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국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명시**
- 해외 이용자보호 관련 규제기관이나 분쟁 해결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 등과의 **실무급 협력체계 구축**

라. 향후 과제

- (법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의무 부과, 상호 지원 등 법적 근거 신설
- (실무 공조체계 구축)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기적 공동 포럼 개최, 실무진 파견 등 교류 추진

제 2 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

- ◆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편방안으로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체계 개편 등에 관하여 총 3차례(제4차~제6차) 논의 진행**
- 시장현황 파악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등 논의
- 사후규제 개편 방안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한 사후 규제체계 재정립 필요성 논의

1. 개요

- 현행 통신사업 규제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여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 생태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음
- 이에 인터넷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현황 파악 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

2.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가. 논의 배경

- 인터넷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새로운 경쟁 이슈와 이용자보호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시장 현황 파악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국내외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국내 서비스 실태와 매출액, 점유율 등 기본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 방안으로 자료 분석의 범위 및 심도에 따라 경쟁 상황평가, 실태조사, 통계보고 등이 제시되어 검토 필요
 - ※ (경쟁상황평가)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를 통해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대상 사업자 식별, (실태조사) 전반적 시장 현황 및 이슈 분석, (통계보고) 매출액, 가입자수 등 기본 현황 파악 및 변화 동향 모니터링

나. 국내외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 입법례

- (전기통신사업법 실태조사) 협의회 운영 중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18. 12. 7일, ' 21. 1. 1일 시행)
 - 과기정통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할 의무 부과

- (정보통신망법 실태조사)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존재(* 18. 6. 12일 공포, ' 18. 12. 13일 시행)

- (공정거래법 실태조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3조)에 의거하여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공표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국무회의 통과, ' 18. 11. 27일)은 시장구조의 조사·공표 외에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제22조의2), 대규모유통업법(제30조), 가맹사업법(제32조의2), 대리점법(제27조의2) 등에 의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
 -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재규정(과태료)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통계보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별 시설 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통계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하도록 규정(제88조제1항)
 - 부가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사업은 각각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사업에 속하므로, 현행 규정상 부가통신사업자도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통계를 과기 정통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고대상 통계를 살펴보면, 통계제공의무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하고 있고(제58조제1항), 실제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계를 제출받지 않고 있음

〈 현행 통계보고 관련 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시행령 제58조(통계 보고)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시설 현황: 서비스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 등
 2. 전기통신 이용실적: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 건수 등
 3. 전기통신이용자 현황: 서비스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 수 등
 4. 통화량 관련 자료: 서비스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과 그 밖에 설비 제공 및 상호접속 관련 정산 자료 등
 - 4의2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기술방식별, 기간별 및 전기통신설비에 부하를 주는 트래픽별 데이터 이용량 관련 자료 등
 5. 회계 관련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자료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월별 선불통화권의 발행총액 및 통화권 사용 명세(별정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 관련 법안 발의현황

- (경쟁상황평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하여만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주요 부가통신서비스까지 확대하여 실시
 - ※ 김성태 의원(' 17. 10월, ' 18. 2월, ' 18. 7월), 신경민 의원(' 17. 11월), 오세정 의원(' 17. 6월) 대표발의

○ (통계보고) 통계보고 의무사업자를 기간·별정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보고 의무* 부과(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18. 7월)

*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역무별 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별도 규정 신설

-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종류에 광고 수익 추가(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17. 10월)

□ 주요 쟁점

○ (경쟁상황평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일정한 분석(구조-행위-성과) 틀로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목적상 필요한지 여부와 가능한지 여부

- (필요성) 경쟁상황평가 도입 취지가 대규모 망 투자비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연독점화되는 기간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사전규제에 활용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 진입장벽이 낮은 부가통신시장에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 존재

· 또한, 경쟁상황평가는 사전규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필요

- (가능성) 부가통신서비스는 주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양면시장으로 일반적 시장획정 기법(SSNIP test*)을 사용할 수 없어 경쟁상황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

* SSNIP test란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수요대체성 여부 판별하여 관련 시장을 확정하는 분석 기법

- (실태조사) 법 위반의 의심 없이 단지 시장 현황에 대한 정보수집 성격의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할 경우 비례 원칙 위반 우려 제기
 - 영업비밀 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법령이 정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 대상으로 하거나, 제재규정을 통해 협조를 강제할 경우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통계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합한 보고대상 통계를 설정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 법 개정을 통해 통계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견해 등 존재

2) 해외 사례

- (경쟁상황평가) 대다수 국가에서 사전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법 상의 경쟁상황 평가를 기간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 부가통신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및 융합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상황평가 미실시
 - EU에서도 통신부문에서 가능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현재 통신법상의 경쟁상황평가를 수행하는 사전규제대상으로 지정된 통신시장*은 4개**로 축소하여 운영
 - * 높고 지속적인 진입장벽, 유효경쟁의 부족, 경쟁법의 불충분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일정한 의무 부과
 - ** 개별 유선전화망에서의 착신, 개별 이동망에서의 음성 착신, Wholesale local access/ Wholesale central access 및 Wholesale high-quality access

- (실태조사) 해외 통신규제기관이 사전규제보다는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실태 조사한 사례가 있음
 - 미국은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경쟁 보고서에 상류 및 하류시장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바 있으나, 경쟁상황의 모니터링 성격이 강함

- 영국 등 유럽 각국의 규제기관은 앱 시장 등 변화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고려한 시장동향을 분석하는 추세

〈표 2-1〉 해외 통신규제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구분	분석명	부가서비스 주요 분석내용	주요 분석자료
FCC (미국)	Mobile Wireless Competition Reports ('10~'14년)	점유율, 이용 가능 앱 수 등	외부자료
Oftcom (영국)	Communications Market Report('04년~)	이용자 그룹, 앱 유형, 사업자별 이용률 등	자체 개발 App
총무성 (일본)	경쟁상황 평가 ('11~'12년)	유형별 점유율 등	외부자료 및 자체 설문조사

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1) 대형 CP

- (경쟁상황평가) 부가통신시장은 진입장벽이 없어 공정경쟁 이슈 발생 가능성이 적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사후규제가 가능한 영역이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상황 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입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성 낮음
 -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담보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 역차별 가중

- (실태조사) 매출액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음

2) 중소 CP

- (경쟁상황평가) 경쟁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상황평가 도입이 필수적인지 의문임

- (실태조사) 현재 ‘경쟁상황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실태조사 수행 중이며, 이는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
 - * (사례1) 과기정통부는 ’ 10년부터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를 통해 부가통신 시장의 이슈 분석
 - (사례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년 ‘인터넷 백서’ 를 통해 인터넷서비스 관련 시장 조사
 - (사례3) 방통위는 올해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 를 매년 추진
- 하지만 법으로 사업자에게 강제적인 자료요구를 하는 수준의 실태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음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시장현황 파악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우선은 **경쟁상황 평가보다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공감
 - (경쟁상황평가) 기간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대상수단 검토에 활용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부가통신시장의 경쟁상황평가는 향후 시장상황 및 규제집행력을 고려하여 확대 여부 검토**
 - 부가통신서비스는 **자유로운 시장진입, 급속한 기술발전** 등의 특성으로 인해 **경쟁상황평가가 혁신을 저하시킬 우려**
 - (실태조사) 전반적인 **시장현황**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가 필요한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도 포함될 필요
 - **공정거래법과의 차별성**을 위해 EU 사례를 참고하여 **B2B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B2C 이슈**를 중심으로 실태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 **실태 조사 근거와 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처음에는 제재규정을 두지 않는 등 단계적 접근 가능

- (통계보고) 통계보고 관련 규정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매출액 등 통계보고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 다만, 중소기업·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의무대상자 제한 필요
 - 부가통신시장 현황 파악에 적합하도록 통계보고 양식 개선, 방통위에 대하여도 통계보고 의무 부과 등도 제시

3. 인터넷 시장 사후규제 체계 개편

가. 논의 배경

-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사후규제체계는 망 사업자의 일방적 우위에 따른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저해행위 및 이용자이익 침해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 망 사업자의 일방적 우위는 약화되고 부가통신사업의 위상 및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규제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 제기

나. 국내외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수범주체를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도 수범주체에 해당
 - 현행 금지행위 규정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제한적*
 - * (사업법) 이용자이익저해행위(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중요사항 미설명·미고지(제5의2호), 모바일 콘텐츠 거래 시 수익배분 거부제한(제7호) 등
(시행령)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는 불합리·차별적 조건·제한 부과(5.사.4), 선 탑재 앱 삭제 제한(5.사.3), 광고와 정보의 미구분(5.사.5), 광고 삭제 제한(5.4.6) 등

○ (공정거래법)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능

- 시장의 동태적 경쟁을 고려하여 관련시장 확정 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며,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효과 평가 시에도 다면적인 시장 성격, 시장의 혁신성 및 동태성 고려

※ (적용사례1)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위의 관련 시장 확정, 시장지배력 평가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적용사례2)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지만, 오픈마켓 시장의 동태성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2) 해외 사례

○ (미국) 통신법 상 정보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에는 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Title II와 달리 법에서 정한 사업자의 행위의무 규정이 없음

- FCC는 전통적으로 정보서비스에 대하여 비규제적인 입장
-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FCC의 규칙 제정 권한을 활용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근거 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 FCC는 '10년 제706(a)조에 근거하여 망 중립성 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에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와 투명성 규제를 포함하였으나,

- 연방항소법원은 제706(a)조는 투명성 규제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차단 금지 및 불합리한 차별금지 규제의 근거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14년)

○ (EU)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표('18. 4월)

* 온라인 상거래 오픈마켓, 온라인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 온라인 소셜 미디어, 온라인 광고 플랫폼 등

- 자율규제 또는 경쟁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입법조치
- 주요 내용은 검색결과에서 사업이용자의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기준 설명 의무,

자사·자회사 서비스 우대에 대한 설명 의무, 거래중단·종료 시 이유 설명 의무 등으로 거래조건의 투명성 강화*에 초점

* 투명성 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며, 과도한 규제에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

다. 관련 쟁점

- 인터넷 생태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혁신을 저해하고 중복규제에 해당하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대립
 -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규모 및 위상 증대에 따라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법 상 규제 근거 부재
 - (혁신 저해 및 중복 규제) 인터넷 시장 경쟁의 역동성과 기술 변화에 따라 선부른 규제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미 타법들에 의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규제만 양산할 수 있음

라. 이해관계자별 입장

1) 국내외 CP

- (혁신 저해)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규제는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해할 것임
 - 부가통신시장은 진입규제가 없어 무한경쟁 상태의 동태적 시장*이므로 진입 차단된 기간통신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 * 부가통신서비스 및 인터넷 포털의 사업영역 및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하여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음(KISDI, '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 (중복 규제) 공정거래법 등 규제가 가능한 타 법령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부가통신 사업자를 규제하고자 하는 금지행위 규제 개편은 과도한 중복규제임

2) 통신사

- 기존 전기통신사업 관련 규제는 기간통신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시장의 중심이 부가통신사업으로 이동하고 있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의 보완 필요
 -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통신 사업 유형 세분화,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기간-부가통신사업 간 규제형평성 확보 필요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관점에서,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따른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부분 공감**
- **(공정 경쟁 보호)** 현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개선 필요**
 - **(현행규제 구체화)**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 명확화, O2O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非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명확화 등
 - **(규제 보완)**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등

마. 향후 과제

- 다양하게 제시된 금지행위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제3절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 망 중립성 및 제로레이팅 정책 방향에 관하여 총 3차례(제1차~제3차 회의) 논의 진행

- 망 중립성 원칙 재정립 필요성 여부 논의
-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 논의

1. 망 중립성

가. 논의 배경

- ' 17. 12월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5G 망 투자 및 혁신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국회,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제기
 - ※ EU에서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G 관련 망중립성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 18년 말 이를 반영한 평가 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할 예정
- 이에 현행 망 중립성 원칙이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에 충분한 명확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재정립 필요성 및 재정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 논의

나. 국내의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 사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가이드라인* 2건 제정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 12월, 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13. 12월, 이하 ‘트래픽 관리 기준’)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투명성)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범위·조건·절차·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
- (차단·차별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장치의 차단 금지 및 합법적인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 (트래픽 관리)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 (관리형 서비스) 최선형 인터넷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 가능

- (트래픽 관리 기준)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 유형,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의무 등

〈 트래픽 관리 기준 주요 내용 〉

-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 망의 기술적 특성 등
-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 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등

□ 사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령)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조건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망 중립성 위반행위 중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이익 저해 시 규제 가능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사.4) 및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방통위 고시 제2017-04호)
 - 시행령 개정 전에는 직접적 규제근거 미비로 약관 위반 또는 이용자 차별 등으로 규제*했으나, 다양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섭하는데 한계 존재
 - * KT가 이용자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및 단말기 제조사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차별” 한 행위로 규제(* 12년)

- (공정거래법) 망 중립성 위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포함, 제23조) 해당 시 규제 가능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유승희 의원) 원칙적으로 트래픽 차단 및 불합리한 차별 금지 (* 16. 9월)
 -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과부하 등에 따른 혼잡으로부터 다수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 ※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및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트래픽 관리정보의 제공 등)
 -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경쟁관계에 있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트래픽 차단, 이용 가능한 서비스 양의 제한 등의 방법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차별로 간주

-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용자의 일상적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18. 7월)

□ 주요 쟁점

- 5G 도입을 앞두고 망 투자유인 제고 및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망 중립성 완화 시 통신사에 과도한 권한 부여, 통신사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 혁신서비스 위축 우려 등으로 반대 견해 대립
- 통신사의 5G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투자 예상액·투자여력 등 입증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
 - 또한, 망 수익을 이용자뿐만 아니라 CP에게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CP는 이미 상당한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견해 대립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특화서비스 제공 시 망 중립성 위반 우려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5G 특성과 망 중립성이 양립가능하며 망 중립성 원칙으로 지속적 혁신이 가능했다는 견해 대립
 - * 하나의 물리적인 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각각의 슬라이스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기술
 - 현행 망 중립성 원칙 하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보고 예외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 존재

2) 해외 사례

□ 미 국

- (망 중립성 원칙 폐지) ' 17. 12월 FCC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인터넷 자유

복원(Restoring Internet Freedom) 규칙 확정(' 18. 6월 시행)

* 광대역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망중립성 정책실패 선언

- ISP를 다시 통신법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투명성 원칙 외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FTC에서 사후규제
- 다만, 투명성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어 차단/전송지연/대가기반 우선 처리에 대하여도 정보 공개 의무 부과

○ (기존 망 중립성 원칙) ' 15.2월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 (' 15. 7월 시행)

- 연방항소법원의 舊 망 중립성 원칙 무효화 판결(' 14년) 이후 ISP를 통신법 Title II 통신서비스로 편입하고, Common carrier 규제* 적용

* 차단 금지(NoBlocking), 전송지연 금지(NoThrottling),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 금지 (NoPaid Prioritization), 사후규제를 위한 일반행동규칙(인터넷 이용 부당간섭·부당불이익 제공 금지), 기술적 트래픽 관리 허용, 투명성 등

- 망중립성 규제는 공중인터넷(최선형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고, 공중망을 이용하지 않는 특수 서비스(specialised service)*는 제외

* IPTV, 심장박동모니터링, Facility-based VoIP, 에너지 소비센서, 차량 텔레매틱스 등(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에 해당)

[그림 2-1]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 변화

구분	2010.12	2015.2	2017.12
망중립성 원칙 변화	Transparency	Transparency	Transparency
	No Blocking	No Blocking	×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No Throttling No Paid Prioritization	×
규제 권한	Title I (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	Title II (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	Title I (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

- (최근 동향) 망 중립성 유지 여부에 대한 입법, 소송, 논쟁 등 지속
 - (연방의회) 상원은 인터넷 자유 복원 규칙의 효력 발생 중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 18. 5. 16), 하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효되지 않음
 - (주 정부) 망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법 또는 집행명령을 제정*하거나 논의 중에 있음
 - * ' 18. 3. 15일 워싱턴주가 처음으로 망 중립성 주법을 제정한데 이어 오레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에서 법률화되었고, 6개 주에서 집행명령 제정
 - 美 법무부는 “정보서비스인 인터넷엑세스서비스는 주간(interstate) 서비스이므로 연방법 적용을 받는다” 며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 소송 제기(' 18. 10. 1)
 - (민간) 인터넷기업들은 FCC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원에 소송 제기*(' 18. 2. 22), 통신협회 등**은 버몬트주의 망 중립성 법안 무효소송 제기(' 18. 10. 18)
 - * 22개 주 정부 및 콜롬비아특별행정구도 합류
 - **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CTIA), 미국케이블TV협회(NCTA), 미국이동통신협회(US 텔레콤), 미국케이블사업자협회(ACA) 등 4개 협회

□ EU

- (법제화) 망 중립성 관련 규정이 포함된 「단일통신시장법」 제정(' 15. 10월)
 -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차별·제한·방해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 예외적인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투명성 등
 - * 주요 요건은 투명성, 비차별적·비례적 관리, 트래픽 범주별 객관적으로 상이한 품질 요건에 근거, 특정 콘텐츠 모니터링 금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지 등
 - ** EU 및 회원국의 법령 준수, 망의 보안성 확보 및 일시적 망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 ISP 및 CP는 특정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요구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특수서비스* 제공 가능
 - * 공익적 서비스, 신규 M2M 서비스 등(가이드라인에서는 VoLTE, IPTV, 실시간 헬스서비스 등)

- 주요 요건은 인터넷엑세스서비스 외에 특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할 것, 인터넷엑세스서비스의 대체제가 아닐 것, 인터넷 엑세스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및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을 것 등

○ (가이드라인 제정) BEREC,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발표(* 16. 8월)

- (합리적·예외적 트래픽 관리의 차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는 예외적 트래픽 관리와 달리 차단·차별 등 금지
- (특수서비스와 트래픽 관리의 차이) 특수서비스는 특정 품질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화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반면, 트래픽 관리에서 범주별 상이한 품질요건 적용은 전체적인 전송 품질의 최적화를 위해 허용
- (최소품질 규제) 최소품질 요건을 기능적·질적 요건(전송품질의 적정성 등) 및 기술적·양적 요건(전송속도 초당 x bits 등)으로 구체화

○ (최근 동향) BEREC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5G 도입에 대비하여 망 중립성 규제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중(* 18. 3월~)

- * 5G에서 이용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시 충분한 유연성 제공 여부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채택 시 충분한 명확성 제공 여부 등
- BEREC, ' 18년말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유럽이사회에 제출하고, ' 19. 4월말 유럽이사회에 망 중립성 평가 완료 예정

다. 이해관계자별 입장

1) 통신사

망 중립성 정책 유지 시 5G 망 투자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완화 필요

※ 망 중립성을 주도해 온 미국의 주요 원칙 폐기는 시대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과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강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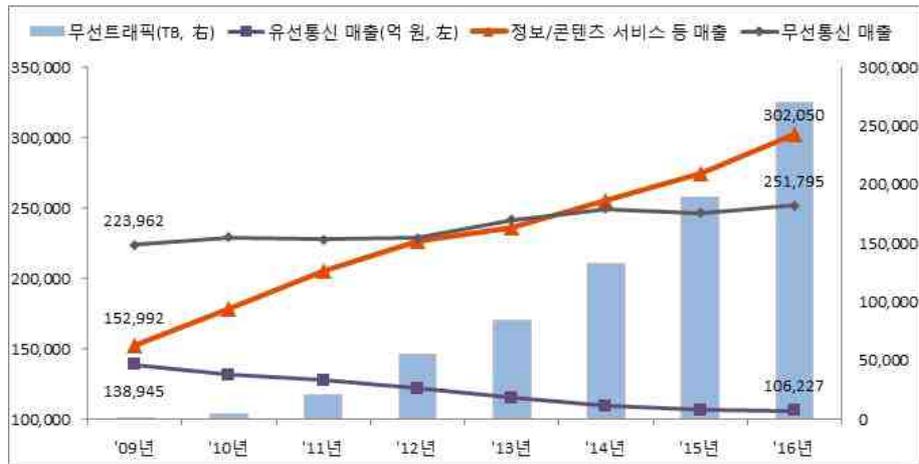
- (망 투자 제고) 5G의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통신사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CP에게 망 이용료 부과 등 합리적 비용분담을 위해 망 중립성 완화 필요
- 연평균 7.1조원의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폭증하는 트래픽* 수용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시장이 포화되어 수익 창출과 산업 성장에 한계
- * 최근 5년간 데이터 트래픽(LTE 기준) 약 11배 증가('12년 2만7천TB→'17년 31만TB, 과기정통부)

〈표 2-2〉 통신4사의 CapEx 추이

(단위: 조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평균
투자비	6.5	6.4	7.7	8.7	7.8	7.5	6.3	6.3	7.1

[그림 2-2] ICT 서비스별 연간 매출액 및 무선트래픽(매년 12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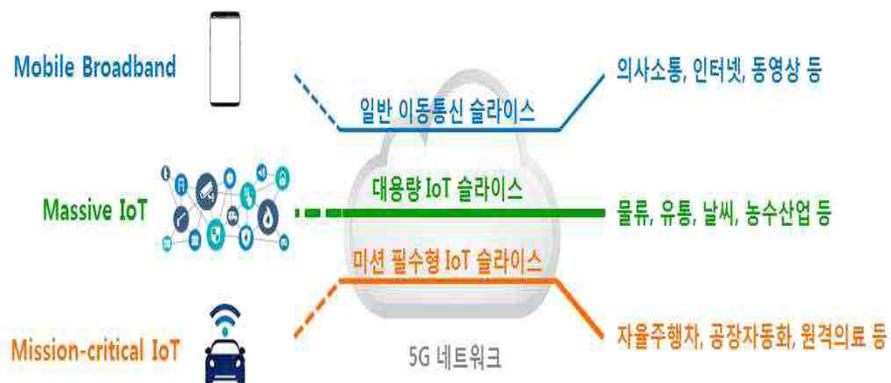
주: “정보/콘텐츠 서비스 등” 은 광고제공, 검색 등 정보매개, 게임, 영상/뉴스/디지털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국내매출이 정확하지 않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CP 매출 반영시 현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통신사가 이용자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형 CP로부터도 망 투자 비용을 분담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필요
 - ※ 이용자 요금은 30조원, CP가 지급하는 비용은 2~3천억원 수준으로 CP가 분담하는 비용은 1% 이하에 불과
- 한편, CP들은 통신사가 IPTV 등에서 매출이 급성장하여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미디어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신사의 사업 관련 내용으로 망 중립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법에 의해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 (혁신서비스 촉진) 5G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상품별 요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망 중립성 규제 유지 시 혁신서비스 출시 저해
 - ※ 관리형 서비스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선언적인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으며, 관련 기준이 모호하여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황임

[그림 2-3]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념도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관리형 서비스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확대하고, 대가기반 우선 처리 (Fast Lane)도 통상적 품질요구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한 허용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트래픽 지연·차단 허용 필요

2) 대형 CP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동등 경쟁환경** 조성에 중요

※ 미국의 망 중립성 완화는 인터넷 속도가 낮고 지역이 광활하여 통신사의 투자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와 상황이 다르며, 최근 주별로 망 중립성 강화 추진

- (5G 투자비 논란) 5G 투자비는 다양한 비용 절감요인들*로 인하여 LTE 투자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비슷한 수준 예상**
 - * 기가비트 LTE와 스몰셀, 빔포밍, MIMO기술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전국망 기지국 설치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이며, 최근 필수설비 공동활용-공동구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최대 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
 - ** 일본(NTT DoCoMo), 독일(Deutsche Telekom), 미국(Verizon) 등은 망 투자비가 LTE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

- (망 투자여력 논란) 통신사가 인터넷·이동통신 ARPU 감소추세를 강조하나, IPTV* 등 미디어분야에서는 매출 급성장하여 5G 투자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 * IPTV는 연 30% 가까이 성장하며 '16년 케이블방송 매출액(2조 1,700억원) 추월, '17. 11월 말에는 가입자 수(1,422만281명)에서도 케이블방송 추월
 - 통신사는 통신서비스에 여러 미디어콘텐츠 서비스를 결합판매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 SKT: 모바일 IPTV '옥수수'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888만명), 월 순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9% 증가(610만명)
 - KT :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와 연계한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미디어콘텐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5,617억원)
 - LGU+: 홈미디어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11.6% 증가, 'U+TV 아이들나라'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IPTV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분석 있음

- 통신설비 투자가 효율적인지, 망 투자비 외에 원가를 상승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등 원가 공개를 통한 입증 필요
- (콘텐츠 투자유인 위축 우려) 통신사는 CP의 콘텐츠 개발 투자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서, CP에게 망 투자비용 분담 요구는 모순됨
- CP는 사실상 트래픽량에 비례해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가중되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IDC, 전용망, CDN 등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
 - * 전세계적으로 CP들은 매년 직간접적 인프라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및 야후의 경우 '11 ~ '13년 매출의 9% 상당을 인프라에 투자 (Analysys Mason, '14년)
 - 통신사는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가 해외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가 등 근거도 밝힐 필요가 있음
- (혁신서비스 촉진) 5G 기술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인터넷접속서비스라는 속성은 유지되므로, 기존의 망 중립성 규제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5G 뿐만 아니라 콘텐츠 혁신에도 기여
-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저지연이 필요한 첨단서비스는 AI 등의 기술과 융합되어 5G 환경이 아닌 지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음
- (통신사의 권한 남용 우려) 망 중립성 원칙은 통신사가 CP에게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인터넷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
- 망 중립성 완화 시 통신사가 콘텐츠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변모하여 인터넷 망 품질이 통신사와의 협상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인터넷망이 이익 망으로 전략될 가능성 높음
-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 위협) 통신사는 결합판매를 통해 이동통신 지배력을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전이하려 할 가능성이 높는데, 망 중립성 완화는 이러한 시도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

- 통신사들은 일반적인 통신사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사업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들을 네트워크 서비스와 마음껏 결합판매할 수 있는 통신사 고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3) 중소 CP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중요한데, 망 중립성 완화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 있음
 - 망 중립성 규제 완화 시 통신사에게 망 관리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협상력과 자본이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고 중소 CP는 퇴출될 우려
 - 통신사가 작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 CP를 배제하는 기제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하에서 통신사들은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감시, 법제화 등을 검토할 필요
 - 특히,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Fast Lane 등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 확립 및 시장 감시 필요

라. 소위원회 논의결과

- ◆ 5G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① 현행체계(가이드라인)를 유지하는 방안, ②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③ 현행체계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뉨
- ① (현행 유지) 5G 기술 특성도 현행 망 중립성 정책의 일반원칙과 규제 틀 속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
 - 현 시점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변경할 기술적·정책적 근거가 미약하며, 규제기관의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 필요

- 5G 도입 이후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안전 관련서비스 등은 서비스 도입 상황에 따라 관리형 서비스 적용 검토
- ② (규제 강화) 현행 트래픽 관리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
 - * 망 혼잡 시 소수의 초다량이용자·대용량서비스 트래픽 제한 등 트래픽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는 현행 가이드라인 규정 개정 필요
- 5G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 망 중립성 원칙과 망 투자의 상관성 등이 입증되지 않음
- 오히려 망에서의 차별은 단지 트래픽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규제 강화 필요

마.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 분석) 5G 구축에 필요한 투자액, 망 중립성 규제로 인해 망 투자가 저해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 및 이에 근거한 분석 필요
 - 또한, 5G에서 망 중립성 규제 완화가 필요한 예로 제시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원격진료 등의 신규서비스가 어떠한 망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상용화될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

2. 제로레이팅

가. 논의 배경

- 통신사의 제로레이팅*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와 이용자 이익을 증진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양립
 - * Zero-Rating,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데이터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
 - (규제 강화) 제로레이팅은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CP에게 불리하고,

- 통신사가 자사계열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등 경쟁제한성이 크므로 규제 필요
- (현행 유지)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소시키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안별 효과를 평가하여 최소한으로 사후규제하는 것이 바람직
- ※ (국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공약집에 제로레이팅 허용 공약. 민주당 김경진 의원, 설문조사에서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1%를 기록했다면서 찬성입장 표명

나. 제로레이팅 현황

- 이통3사가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상품은 총 37종(' 18.7월말 기준)

〈표 2-3〉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 현황

SK텔레콤	KT	LGU+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자사계열사 비중) 콘텐츠 소유권 측면에서 자사계열사와 제3자 비율이 45.9%와 54.1%로 유사한 수준
-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와 내비게이션의 경우 모두 이통사 자사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됨

〈표 2-4〉 이통3사 사업자별 자사계열사 제로레이팅 비중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자사·계열사	6종	5종	6종	17종
제3자	7종	6종	7종	20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제공분야) ‘정보’ (29.7%) 항목의 콘텐츠가 제로레이팅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디오 스트리밍’ (27.0%), ‘동영상 스트리밍’ (16.2%) 순

※ 이통3사 모두 제공하는 ‘정보’, ‘오디오 스트리밍’, ‘동영상 스트리밍’, ‘내비게이션’ 항목의 제로레이팅 상품이 총 30종(81.1%)으로 대부분을 차지

〈표 2-5〉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제공분야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정보	4종	4종	3종	11종
오디오 스트리밍	3종	1종	6종	10종
동영상 스트리밍	2종	2종	2종	6종
내비게이션	1종	1종	1종	3종
교육	-	2종	-	2종
쇼핑	1종	1종	-	2종
게임	1종	-	-	1종
웹툰	1종	-	-	1종
클라우드 스토리지	-	-	1종	1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 (부가 요금) 37종 중 20종(54.1%)은 무료이고,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은 17종(45.9%)

※ 데이터 제공량에 상한을 두고 있는 상품 대부분이 유료(월 5,000 ~ 9,900원)

〈표 2-6〉 이통3사 사업자별 제로레이팅 부가요금

구 분	SK텔레콤	KT	LGU+	합 계
무료	8종	7종	5종	20종
유료	5종	4종	8종	17종
합 계	13종	11종	13종	37종

다. 국내외 법제도 현황

1) 국내 현황

사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로레이팅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용약관 신고 시 모니터링 가능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등) 제로레이팅 관련 별도 규정 없음

사후 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의 부당한 부과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제로레이팅 규제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5.사.4) 및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방통위 고시 제2017-04호)

○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3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행위(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포함, 제23조)에 해당하는 제로레이팅 규제 가능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사업법 개정안, ' 18. 7월) 통신사가 직접 또는 사업자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용자의 편익, 후생증대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주요 쟁점

○ (이용자 부담 경감) 제로레이팅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감소하나, 통신사-CP가 그 비용을 다른 이용자의 통신요금 인상, 콘텐츠 이용료 인상, 광고 증가 등으로 전가할 우려 제기

- (망 중립성 위반) 제로레이팅은 트래픽 관리가 없어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나, 경제적 차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콘텐츠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견해도 존재
- (지배력 전이) 통신사가 자사계열사 서비스에 유리한 제로레이팅 기준을 적용하여 통신시장 지배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시킬 우려
- (중소사업자 약화) 사실상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대형 CP만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중소CP·스타트업에게 불리하게 작용

2) 해외 사례

미국

- (트럼프 정부) FCC는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경쟁 촉진 등의 사유로 제로 레이팅을 사전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 FTC의 사후규제는 가능
- (오바마 정부) FCC 일반행위규칙*에 따른 사후규제 적용, 통신사의 자사계열사 제로레이팅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는 보고서 발표(' 17. 1월)
 - * 판단기준은 이용자 통제, 경쟁에 미치는 효과, 소비자보호, 혁신/투자와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효과, 표현의 자유, 애플리케이션 유형과 무관한 처리, 업계 관행 등
 - 경쟁제한 우려는 봉쇄효과, 경쟁 CP의 비용인상 등 수직적 결합의 부정적 측면에 근거하나,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저소득층 요금 인하 등을 강조하며 별도 조치 없이 관련 조사 종료(' 17. 2월)

EU

- (단일통신시장법) 이용자 권리가 제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거래를 허용하고 사후규제 접근법 채택(' 15. 10월)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동등처리 위반*시 금지하고, 그 외에는 사안별 판단하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부정적** 입장 명시(' 16. 8월)

* 이용자의 데이터 소진 후 제로레이팅이 적용되는 애플리케이션만 정상처리되고 그 외 애플리케이션은 차단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트래픽 동등처리 원칙 위반

** 특정 애플리케이션에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범주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용자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수 있음

- 사후규제 기준은 망 중립성 규제 목적, 관련 ISP 및 CP의 시장 지위, 이용자 권리 제한, 행위 규모 및 대안 존재 등

○ (가이드라인 적용) BEREC은 각국의 제로레이팅 사례 분석 후 가이드라인의 규제 기준이 충분하다고 평가(' 17. 12월)

- 트래픽 관리 포함 여부에 따라 사례들을 구분하고, 이후 모든 CP들에게 비차별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 트래픽 관리가 없고, 사실상 모든 CP에 대한 개방 및 동일조건 요구

라. 이해관계자별 입장

1) 통신사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사회적 후생 증대를 위해 제로레이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사안별로 판단하되 최소한의 규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배타적·차별적 제로레이팅도 경쟁 촉진 및 이용자 이익 제고가 가능하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최근 무제한 요금제 가입이 증가하여 제로레이팅의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약화

- 또한, 중소 CP의 제로레이팅을 활용한 시장확대에 도움이 되는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

※ 미국 T-Mobile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Binge On’ 은 100여개 CP들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중으로 1인당 동영상 앱 이용시간이 출시 2개월만에 16 ~ 52% 증가

○ (자사서비스)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경쟁 CP에게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로레이팅을 제시하는 한 문제가 없음

* 경쟁 CP에게 이용자의 요금이 면제되는 금액 이하로 제공

- 통신사가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전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이용시간 점유율: 유튜브(85.6%) > 아프리카TV(3.3%) > 네이버TV(2.0%) > 비디오포털(1.9%) > 옥수수(1.3%) (와이즈앱, ' 18. 5월)

○ (계열사서비스) 경쟁 CP에게 계열사와 동등한 제로레이팅 조건 제시하면 허용 필요

2) 대형 CP

○ 제로레이팅은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결정될 영역이나, 통신사의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은 규제 강화 필요

- 제로레이팅이 망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고 모든 트래픽과 CP들을 공평하게 취급 하면서 시행되어야 함

○ (자사서비스) 통신사는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에 원가만이 소요되나 경쟁 CP들은 원가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엄격한 규제 필요

○ (계열사서비스) 계열사서비스 제로레이팅 시 계열사 우대 가능성이 높는데 사후 규제가 미흡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경쟁 CP에게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3) 중소 CP

- 비용부담 능력 및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 CP는 제로레이팅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왜곡
 - 통신비 인하는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제로레이팅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특정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고착(lock-in) 강화
 - 제로레이팅으로 가계통신비는 감소하더라도 기업통신비가 증가하고 기업 통신비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므로 통신비 절감효과가 없음
 - 통신사가 스타트업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지원하는 시혜적 정책보다는 망이용료의 하락을 통한 보편적 정책이 타당

- (자사계열사서비스) 통신사는 자사계열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력을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 존재
 - ※ SKT 고객의 47.7%, KT 고객의 45.9%, LGU+ 고객의 47.5%는 통신사 자사계열사의 OTT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 중(미디어오늘, ' 16. 12. 10)
 - 정부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차단할 필요

마. 소위원회 논의결과

◆ 제로레이팅에 대해 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②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으로 견해가 나뉨

① (사후 규제) 제로레이팅은 통신사·CP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능하여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이익이 증가하므로, 모든 제로레이팅을 허용하고 불공정행위 시 사후규제

- 특정 CP에 대하여만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거나 CP 간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더라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사안별로 판단하여 사후규제

- 다만, 제로레이팅의 대상, 조건, 이용자 규모 등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
 - ② **(조건 부과)** 동등조건 의무화, 통신사의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금지 또는 동등 조건 의무화 등 제시
 - **(동등조건 의무화)** 특정 CP에게만 제공하거나 우대하는 경우 **공정 경쟁 및 이용자 선택을 현저히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P에게 **동등 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 **(자사서비스 제로레이팅)** 통신사의 지배력이 전이될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하거나, 허용 시 다른 CP의 동일·유사 서비스에 대해 **동등조건*** 제공 의무화 필요
- * 동등조건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용자요금, 도매요금 등으로 견해가 나뉨

제4절 망 이용료 정책

- ◆ **망 이용료 현황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총 3차례(제4차~제6차 회의) 논의 진행**
- 국내·외 CP 간, 대형·중소 CP 간 망 이용료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 논의

1. 논의 배경

- (국내·외 CP 간 차별) 네이버는 '17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수익만 챙긴다고 비판하면서 구글에 대해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
- 이에 국회·언론 등은 통신사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등 글로벌 CP에게 국내 CP 대비 망 이용료를 낮게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등 차별 한다고 지적

- (대형·중소 CP 간 차별) 중소CP·스타트업은 망 이용료가 CP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져 대형 CP에 비해 중소CP·스타트업의 망 이용료가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
 - ※ 중소CP·스타트업이 AWS(Amazon Web Services) 등 글로벌 CDN으로 이동
 - 다만, 그 이유는 망 이용료 때문이 아니라 AWS에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적은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존재
 - AI, IoT 등 DT(Data Technology) 스타트업은 비용에서 망 이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비스가 성장해야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는 구조이어서 망 이용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2. 국내·외 망 이용료 현황

- 망 이용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CP가 통신사의 모든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비용(예: 인터넷전용회선료, IDC 접속료* 등)을 총칭하여 논의
 - * CP가 통신사의 IDC에 입주한 경우 접속료 등의 명칭으로 망 이용료 부과
 - 통신사 IDC 약관에서 KT는 ‘접속료’ 로, SKB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로, LGU+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 로 명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망 이용료의 개별유형이 구분되지 않아 각각의 이용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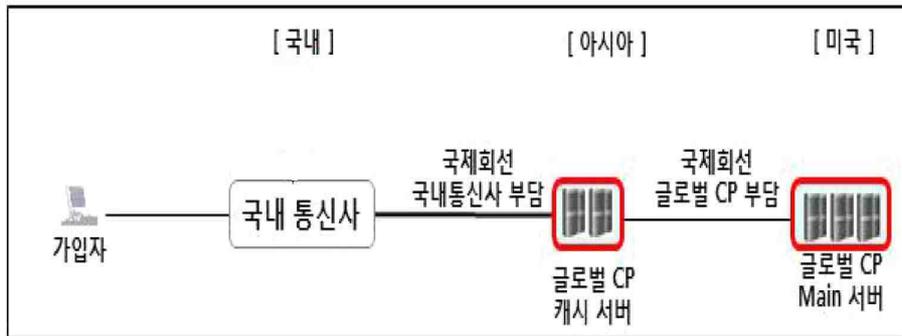
가. 국내 현황

- (국내 CP)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CP들은 각 통신사에 인터넷 전용회선료, IDC접속료 등 망 이용료를 지급하며, CDN 업체 등에도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짐
 - ※ ' 16년 기준 네이버 734억원, 카카오 300억원, 아프리카TV 90억원 수준(서울경제, ' 18. 2. 19), 엔씨소프트, 넷마블게임즈 등 연간 약 100억원(동아 비즈니스위치, ' 17.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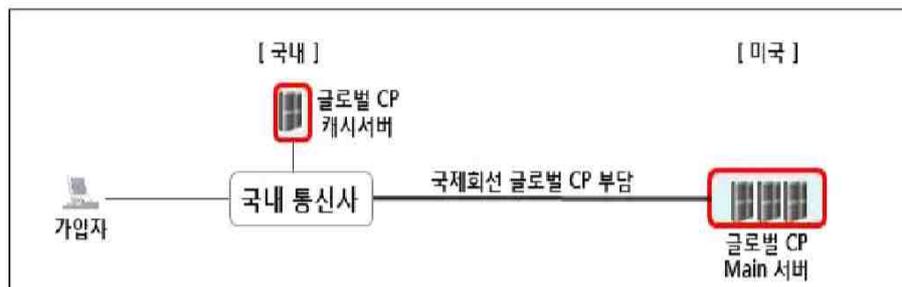
- 이에 대해 통신사는 망 이용료 기준에 부합하는 각 사의 정확한 수치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언론보도마다 금액이 다른 등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CP는 위와 같이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

○ (글로벌 CP) ' 10년 이후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급증하여 글로벌 CP와 통신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또는 아시아(일본, 홍콩 등)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여 국내 통신사와 연동

- (해외연동 방식)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CP가 각자 peering 지점까지 연결하는 국제회선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무정산 상호접속(free-peering)



- (국내연동 방식) 글로벌 CP가 국제회선 및 국내 캐시서버를 구축하고, 망 이용료(IDC접속료) 부담 또는 미부담



나. 해외 현황

-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통신사와 직접 상호접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접속은 자율협상으로 이루어지고 무정산 및 paid-peering(대형통신사) 사례가 병존

※ 이하의 사례는 글로벌 CP로 인해 무정산하던 통신사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여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통신사가 상대 통신사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글로벌 CP가 통신사와 paid-peering 계약 체결한 사례임

1) 미 국

- (Comcast v. Level3) Comcast가 상호 무정산하던 Level3와의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합의('13년)
 - 넷플릭스가 Level3와 CDN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Level3와 Comcast 간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여 Comcast가 Level3에게 대가 지급 요구
- (Comcast v.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Comcast, Verizon, AT&T 등과 상호접속 협정의 일환인 paid-peering 계약을 체결('14년)
 - 넷플릭스가 Full HD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트래픽 지연 현상이 지속되자 Comcast 등에 직접연동하고 망 이용료 지급에 합의

2) 프랑스

- (France Telecom v. Cogent) FT가 상호 무정산하던 Cogent와의 트래픽 불균형이 발생하자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용량 증설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공정위('12. 9월) 및 법원('15. 5월)이 적법하다고 판단
 - Cogent가 웹하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CP인 Megaupload와 트래픽 전송

- 계약을 체결하면서 FT의 네트워크로 과도한 트래픽이 전송
- 공정위와 법원은 트래픽 교환비용의 불균형이 있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을 인정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 (구글) 1위 사업자인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13년)
 - 기존에 구글은 글로벌 IBP를 통해 프랑스 ISP들에게 트래픽을 전송하였으나, 위 분쟁 이후 Orange와 직접 연동하고 대가 지급

- (넷플릭스) 구글과 동일하게 Orange 망을 직접 연결하고 paid-peering 계약 체결
 - ※ SFR, Bouygues Tel은 자사 망에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설치하고 망 이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4위 사업자인 Free는 협상 진행 중임

3. 주요 쟁점

- (국내외 CP 간 차이) 망 이용료 차이* 및 서비스 고도화 차이**로 국내 CP의 경쟁력 저하 우려 견해와 국내외 CP의 상이한 비용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비교는 부당하고 게이트키퍼인 통신사 결정***이라는 견해 대립
 - * 트래픽 증가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고 있는 주체가 글로벌 CP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망 증설·고도화 비용이 국내 CP 및 이용자에게만 전가
 - ** 국내 CP는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망 이용료 부담도 증가하므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UHD, VR 등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가 어려울 수 있음
 - *** 통신사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근거로 국내외 CP들에게 요금인상을 전가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동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 함
- (대형·중소 CP 간 차이) 정상적 대량구매 할인이라는 견해와 대량구매의 비용절감 효과를 상회하는 요금차별로 중소 CP·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발생시킨다는 견해 대립

4. 이해관계자별 입장

가. 통신사

- (국내외 CP 간 차이) 글로벌 CP는 이용자의 자사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 국내 통신사 간 경쟁 상황 등에 기인한 우월적 협상지위와 통신사의 국제망 비용절감 효과를 이용하여 망 이용료 미부과 요구
 - 글로벌 CP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 서버만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 통신사의 국제망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글로벌 CP의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되지 않으면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높아지므로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 또한, 통신사가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제한하는 수단 등을 취하는 방법은 망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려움
 - 이에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글로벌 CP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필요
 - * 페이스북은 통신사와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여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 민원이 다수 발생
 - ** CP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 CP의 법령 위반 또는 이용자 피해 우려 시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 부여(망 중립성 완화),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등
 - 한편, CP들이 우리나라의 망 이용료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아시아 평균 대비 낮은 편*이고, 사업자 간 계약 내용이 비공개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음
 - * 통신시장조사업체인 TeleGeography가 대륙별 및 아시아 국가별 망 이용료 비교 (' 18. 6. 30)
 - 한국의 평균 망이용료는 \$9.22/Mbps로 아시아 평균(\$23.54/Mbps)의 40% 수준

- (대형·중소 CP 간 차이) 대량구매로 인한 비용 절감 등에 기인한 요금 할인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일반적 현상이고, 정당한 다량할인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차별은 행하고 있지 않음
 - '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후 중소 CP스타트업의 망 이용료가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의 인상 요구에 불과할 뿐 실제 인상한 경우는 거의 없음
 - 중소 CP스타트업이 AWS로 이동하는 이유는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CDN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임

나. 글로벌 CP

- (국내·외 CP 간 차이)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서로 다른 비용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형평성 관점에서 실제 지급하는 비용을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통신사는 글로벌 CP와 협의 하에 캐시서버를 설치함으로써 국제회선 설비 증설 등에 들었어야 할 추가적인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지만, 국내 CP는 통신사의 비용 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없음
- 대부분의 글로벌 CP는 한국 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free peering으로 서비스 제공하나, 소수의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의 국제회선 비용 절감과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캐시서버 설치
 - 해외 대부분의 구간에서 트래픽 전송을 위해 글로벌 CP 부담으로 국제 회선을 구축해왔으며, 아시아의 나머지 구간에서 한국까지의 트래픽 전송을 위해 상호 접속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통신사와 CP 간 차이) 인터넷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의 비용만 일방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통신사는 적극적 망 투자 조건으로 허가 받고 제도적 진입장벽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망 투자 의무를 CP들에게 전가할 수 없음
 - 통신사는 CP들이 구축한 플랫폼에 기반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나, CP의 콘텐츠 개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음
 - * CP는 망 이용을 촉진할 첨단서비스에 대규모 투자비를 집행 중이며, 이로 인해 통신사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나, 그 비용과 위험은 전적으로 CP가 감당
- 글로벌 CP는 접속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유인이 통신사보다 더욱 큼
- CP들의 서비스는 대부분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
- 최근 페이스북-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책 환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의 상호접속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이한 점에서 비롯됨
 - *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을 동등계위 ISP 간에도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체계
 - ** 인터넷망 간 상호접속에서 ISP 간에는 통상 트래픽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무정산 체계

다. 국내 대형 CP

- CP 간 망 이용료 차별이 있다면, 게이트키퍼인 통신사의 결정으로 초래된 것임
 - 통신사는 글로벌 CP와의 계약을 통해 국제회선 비용을 감축하고 있으므로, 통신사 주장처럼 일방적 니즈에 의한 계약이 아님
- 또한, 통신사 주장대로 우리나라 망 이용료가 세계적으로 비싼 수준*이 아니라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통신사에 원가 공개를 요구함
 - * 글로벌 CDN 업체인 CloudFlare가 각국의 망 이용료 비교(' 16.8.17)

- 서울과 대만의 중계 비용이 높은 편(유럽이나 북미의 15배 이상)이며, 한국은 망 이용료가 상승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

라. 중소 CP

-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망 이용료 인상 효과가 중소 CP·스타트업 및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CDN 등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망 이용료가 비싼 편임
 - 대형 CP는 협상력이 커서 할인된 가격을 지불하나 중소 CP는 가격이 비싸고, 통신사-CP 간 비밀유지계약으로 가격조건 공개가 안 되고 있음
 - 통신사가 해외 CP에 대한 손실을 국내 CP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필요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망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 수립 필요
 - 중소 CP·스타트업에 대해 망 이용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우대하는 가격정책 도입 필요

5. 소위원회 논의결과

- ◆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 다만, 현재 망 이용료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
 - 망 이용료 차별 해소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실태 파악,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의견 제시
 - (실태 파악) 구체적 정책 수립에 앞서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선행될 필요

※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시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불공정행위 금지)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행위도 금지**

- (가이드라인 마련)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예시 〉

- (성실협상 의무) 통신사와 CP 모두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계약체결 거부 금지
- (사전고지 의무) 접속경로 변경 등 접속품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변경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 부과
- (망 이용료 산정 원칙) 직접적으로 망 이용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망 이용료 산정 원칙 선언

바. 향후 과제

○ (법령 개정)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 통신사 등에게 망 이용료 관련 자료(계약의 상대방, 유형, 용량, 가격조건 및 실제 트래픽량 등)를 규제기관에 제출할 의무 부과 규정 신설 검토

※ 프랑스 규제기관(ARCEP)은 상호접속 분야에서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통신사 등에게 6개월마다 자료를 제출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음('12년 ~)

○ (실태 조사) 망 이용료 계약 및 트래픽량 등 현황을 점검하여 국내외 CP 간 및 대형·중소 CP 간 형평성 있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 파악

○ (사후규제기준 구체화) 망 이용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판단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가칭) 마련 검토

제5절 상생협력

- ◆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하여 제5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제안

1. 논의 배경

- 글로벌 경쟁 시대의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상생 협력을 통한 다양한 인터넷 기업의 동반 성장 필요성 제기
 - 글로벌 경쟁을 위한 국내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이종 기업 간 협업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 개발과 도전과 창업을 유도하는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업의 특색에 맞춘 상생협력 사업을 개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선순환적 인터넷 생태계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 특히, 중소CP·스타트업들이 망 이용료 부담으로 인해 소수 글로벌 CDN 업체로 이동하고 있어 향후 종속성 강화 및 협상력 저하 우려 제기

2. 사업자별 상생 협력 현황

가. 통신사

1) SKT

- (Bravo! Restart) ' 13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년 창업 및 청년실업 해소 등 공익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사업
 - Biz 모델 검증 지원, R&D 지원,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마케팅 지원, 멘토링 등
 - 에이티랩, 운동이 땀길 때 등 총 48개 팀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

- (Dream Venture Star)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 14년부터 정부와 함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
 - 자금 지원, 사업개발 지원, 기술 개발 지원, Growth 지원 등
 - ' 18년까지 총 29개 팀을 육성하여 누적 매출 164억원, 투자 유치 406억, 신규 고용창출 151명의 성과를 창출

- (101 스타트업 코리아) YT 중심의 우수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사업 노하우 제공 및 국내 전문가의 멘토링/세미나 등을 지원(' 13년~)
 - VIP 멘토링, 스타트업향 세미나, VC 등 투자지원, 유관기관 연계 지원, 개발 환경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
 - ' 13년 1기 6개 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6개팀을 육성하였으며, 이 중 40여개 팀에서 약 480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

- (True Innovation) 스타트업 등 다양한 외부 Partner와의 혁신창출 및 Biz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 18. 2월~)
 - 멘토링, 국내외 파트너와의 교류, 글로벌 협업 공간 및 공동 마케팅 지원, IR/법무/세무 등 교육과정, Tech Clinic, CEO모임, 데모 데이 등
 - 유라이크코리아 등 스타트업과 함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진행

- (기타) 금융, 교육, 기술, 인력, 복지 지원 등
 - (금융 지원) 동반성장 펀드(규모 1,675억원)를 통한 대출 지원, 지분 투자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17년 누계 417억원) 등
 - (교육 지원) 동반성장 아카데미를 통한 CEO세미나 등 직급별 맞춤 교육, 110여개

온라인 과정 운영 및 신규 과정 지속 개발

- (기술 지원) T developers, Thingplug 등 기술개발 Infra 무상지원, 민관 공동 기술개발, 기술자료 임치제를 통한 파트너사 기술보호
- (인력 및 복지 지원) SK고용디딤돌 운영을 통한 우수 인력 육성 및 채용 지원, Biz 파트너 임직원 대상 복지 지원(복지포인트, 장학금 등)

2) KT

- (Biz Collaboration 프로그램) ICT기반 융복합 사업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고, KT-창업기업 간 사업화, 공동개발 등 협업을 통해 육성
 - 창업 7년 이내 법인기업·벤처기업 중 VR/AR, AI 등 KT 신규사업 개발 및 협력 관련 분야에서 15개사 내외에 KT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허 출원인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지원
- (K-Champ 사업화 집중지원 프로그램) K-Champ 육성기업 중 성과창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후속 지원하여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
 - '16~'17년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벤처기업 중 15개사 내외에 시장전문가 1:1멘토링, 특허권,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3개월간)
- (Biz Challenge 프로그램)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집중 육성
 - 창업 1년 이내 법인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10개사 내외에 구체화, 권리화, 실증화, 시장검증, 글로벌 지원 등 기업당 3,000만원 내외 지원(5개월 이내)
- (Biz Growth Marketing 프로그램) 시장진입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벤처 기업 발굴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판매 준비 활동을 지원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중 10개사 내외에 기업당 3,000만원 내외로

테스트마케팅, 시장조사 및 분석, 관측활동 지원(5개월 이내)

-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 KT가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를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11년~'17년까지 특허 무상양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누적 293건의 특허를 무상양도한 바 있으며, '18년에는 총 260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무상양도 프로그램 진행 중

3) LGU+

- (CEO간담회) '17. 6월부터 매월 테마별로 2~4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CEO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부와의 협력 및 투자기회 제공
 - 27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하였으며,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 협력 추진
- (데모데이) 해외통신사, 스타트업 육성기관, 정부기관과의 공동 데모데이를 주관하여 당사 관계자 대상 발표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 (유플러스-KDDI-KOTRA 데모데이) '17. 7. 18일 공동 데모데이에서 70여개의 지원업체 중 최종 9개사를 선발하여 LGU+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사업부 협력 논의(6개사) 및 CEO간담회(3개사)
 - (유플러스-본투글로벌 데모데이) '17. 10. 26일 공동 데모데이에서 150여개 B2G 멤버사 중 최종 6개사를 선발하여 LGU+ 본사에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CEO간담회(3개사) 및 사업부 협력 논의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국내 중소 디바이스앱 개발사들이 손쉽게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오픈랩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Proof of Concept/상용화 지원
 - (운영현황) 상암 오픈랩(NB-IoT 통신모듈 및 개발보드 제공, LTE 테스트 단말 지원), 마곡 오픈랩(M2M, NB-IoT 시험망 테스트 및 장비 지원), 대전 R&D 센터

운영 중

- (이용실적) '18년 현재 130개 업체에서 방문사용 중, '17년 NB-IoT룸, Device룸, S/W Test룸, Shield룸의 이용인원은 6,500여 명에 달함
- (추가계획) 5G 생태계 구축의 상생파트너인 국내 중소 통신장비사,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5G 오픈랩을 '19년 추가운영 예정

○ (투자) 직·간접 투자로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마련

- (직접투자) 사업적 필요시 지분 투자, JV 설립, 인수 추진 등
- (간접투자) KIF('02년, 통신3사), 소프트뱅크벤처스펀드('17년), 심본파트너스 펀드('17년), LG CVC('18년) 등 펀드 출자

나. 대형 CP

1) 네이버

○ (D2 Startup Factory) 국내 테크 스타트업(Tech Startup: 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테크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 및 지원('15. 5월~)

- '15. 5월 개소 이후 '17년까지 19개 사에 투자, 36개 사에 업무 공간 제공, 1,080건의 스타트업과 개발자 간 네트워킹 미팅 지원
-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13개 사는 네이버/라인(LINE)과 협력 프로젝트 진행 또는 검토 중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민관협력(과기정통부, 네이버, 카카오, 투자기관 등으로 구성)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및 유망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14년~)

- 실리콘밸리 및 중국 진출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는 컨퍼런스 개최,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10개 유망 스타트업들과 현지 기업인, 투자자 등과의 만남 주선('17년)

- (프로젝트 꽃) 네이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 및 창작 지원, 이용자와의 접점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스몰 비즈니스·창작자 육성('16년~)
 - 온라인 상점 입점 서비스인 '스마트 스토어',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으로 이용자와 연결해주는 '원도' 등이 대표적인 사업 플랫폼
 - '17년 사내 예산으로 총 600억 원 규모의 펀드('분수펀드')를 조성하여 사업 플랫폼 부문에 2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 5천 명의 신규 창업자 배출

-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스몰 비즈니스·창작자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주요 거점에 오프라인 창업 성장 지원센터 운영('13년 역삼, '17년 부산센터 오픈, '18년 광주, 대전센터 오픈 예정)
 - 온라인 창업과 초기 운영을 위한 기초정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노하우 등 다양한 교육 제공,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공간과 관련 장비 무료 지원

2) 카카오

-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다양한 제조업 및 소규모 창작자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공동주문·선주문·후생산 방식으로 유통하는 플랫폼 운영('16년~)
 - 대량생산으로 인한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주문 수량을 넘은 제품만 제작토록 하는 시스템 채택
 - 파트너 사 980개 참여, 누적 구매인원은 29만 명이며, 파트너 사는 메이커스 판매를 통해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해외 진출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디자인 분야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17년)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자인 분야 우수 창업기업 10개 사를 밀라노 소재 박람회로 파견하고 카카오 상생서포터즈관을 마련하여

상품 소개

- 사전에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현장에서 무역 전문가 멘토링 및 전문 통역을 제공하여 수출 상담 지원

○ (지역 기업 협력) 제주지역 VR 생태계 구축 및 제주지역 스타트업 협회 특별 회원으로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

- '17년 제주도 내 VR 벤처기업과 테마파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지역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플레이박스 VR' 체험관 운영

3) 구글

○ (구글 캠퍼스 서울)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교류, 및 교육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15. 5월~)

- (개요) 아시아에서 첫번째(세계에서 세번째)로 ' 15년 설립, 330개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 1만 5천명 이상의 창업가들 참가, 입주한 28개 사가 약 390억원 투자 유치
- (캠퍼스 입주 프로그램)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입주사 전용 사무실, 전문가 멘토링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혜택 제공

- (엄마를 위한 캠퍼스) 출산과 육아로 창업을 미루었던 부모들의 창업 지원 (' 17년까지 총 77명의 졸업생 배출)

※ '자란다', '모이', '그로잉맘', '베이비프렌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창업

- (캠퍼스 엑스퍼트 서밋) 전 세계 구글러들이 2주 동안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마케팅, 파트너십, UX/IX 디자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2회 (' 16' 17년)동안 총 26개 사 1,100여 명 참가)

- (캠퍼스 스타트업 스쿨)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플랫폼, 기술,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 진행(' 17. 9월까지 총 70회 이상 세션에 총 2,600명 이상 수강)

○ (개발자를 위한 활동)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오프라인 모임, 컨퍼런스,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 및 활동 후원(* 12년~)

- (Google Developers Group) GDG(구글 기술에 관심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최하는 DevFest 컨퍼런스(개발자들 간 지식 공유), Women Techmakers (테크업계 종사 여성들을 위한 모임) 등 후원
- (Google HackFair) 개발자들이 구글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을 전시 및 공유할 수 있는 연례행사 개최

○ (기타 사회 공헌 활동)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전파, 디지털 미디어 분야 교육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단체 지원 등

-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구글 플랫폼기술(유튜브, 아트앤컬처, 스트리트뷰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 자연 유산 등을 전 세계에 소개(* 12년~)
- (사회를 위한 활동) 디지털 미디어 소양을 교육하는 ‘디지털&미디어 리더십 캠퍼스’ (* 16년~), 미디어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젊은 저널리스트 양성 프로그램’ (* 14년~) 등
- (비영리단체를 위한 활동) 비영리 단체의 조직운영 및 홍보를 돕기 위해 구글 서비스(구글 앱스 사용자 라이선스, 애드워즈 광고비 등) 무상 지원(* 15년~)

4) 페이스북

○ (개발자/스타트업 지원)

- (Facebook Innovation Lab) 연간 최소 2,000명의 개발자에게 기술 교육 및 3,000명에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판교 2 벨리 문화 ICT 융합센터 내 150평 규모의 센터를 오픈(* 18. 5월)
- (Facebook Namsan Lab) 창업 3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에 글로벌 멘토링 및 벤처 캐피탈 연결 등 지원, 서울시 중구 아산나눔재단 내 100평 규모 센터 오픈(* 18. 9월)
- (Technology Revolution Together) 실리콘밸리 현지 육성 프로그램(정보 통신 기술진흥센터 및 KIC 실리콘밸리 협업)을 통해 한국 VR/AR 스타트업에게 기술

개발 멘토링 지원(' 17년~)

- (Developer Circle) 국내 온라인 개발자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제공 및 매달 오프라인 모임 주최·지원, 매년 커뮤니티 리더의 페이스북 본사 방문 전액지원
- (FBStart) 국내 앱 개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자동화를 위한 유료 프로그램 무상 지원 및 멘토링 제공

○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

- (Made by Korea, Connected by Faceboo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약 2,000개 사)에게 무상 교육 및 광고비 지원 (' 17. 7월~)
- (Marketing Bootcamp) 중소·중견 기업 인력(1,000명)에게 무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관련 1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Mobile Moves Business) 지역별 중소기업인들(부산, 광주, 대전 소재 300명)을 상대로 무상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제공
- (Made by You Fair) 국내 중소상공인들(1,000명)의 마케팅 소양 증진 교육 및 오프라인 접점 제공
- (VideotoGo) 국내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100명)에게 모바일 광고 템플릿 제작 지원 및 교육, 온라인으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소·대기업 대상으로 모바일 광고 제작 가이드 및 실습 워크숍 진행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제안내용

※ 제5차 회의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

○ (통신사와 스타트업의 상생)

-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활성화 된 후 수익모델이 개발되므로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트래픽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망 이용료 구조 필요

- (스타트업 요금제 신설) 모바일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휴대폰, 태블릿 PC, Android TV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므로 이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 필요
- (옛지 컴퓨팅 시장을 위한 지원) API, 개발키트, Library 등을 공개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플랫폼에 연결하는 형태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형CP와 스타트업의 상생)

- (API 공개) 대형 CP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API를 공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부가서비스 개발 촉진
- (스타트업 마케팅 지원) 대형 CP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비용을 일정기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 형태의 프로모션 진행
- (스타트업 홍보 채널 신설) 대형 CP의 플랫폼에서 스타트업 회사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소개하면, 대형 CP도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음

4.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통신사 및 대형 CP가 운영 중인 상생 프로그램의 개선 및 추가적 상생협력 방안을 제안**
- (자율적 상생) 기존의 민간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하되,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가 상생협력 혹은 사회공헌을 압박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관행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음
 - (이익 공유 및 비용 분담) '협력이익공유제' 등 중소 CP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눠주는 방안, 중소기업의 비용 중 대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 등 제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안한 망 이용료 인하(한시적 무료 포함), 스타트업

전용요금제 신설 등

- (지속가능성 지원) 창업 이후 **홍보***, **경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 제시
 - * 네이버·카카오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소개 프로그램 확대, 구글·페이스북의 앱 관련 홍보 프로그램 강화 등
 - ** 경영지도 등 경영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공동 운영) 중복지원 방지, 지원규모 확대 등을 위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제시

● 저 자 소 개 ●

김 현 수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 인 규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 경제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염 수 현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과 석사/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상 미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8-17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

2018년 월 일 인쇄

2018년 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